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5479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영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12. 22. 접수 제132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등

-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9. 3. 26.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32,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9. 3. 26.부터 2020. 3. 25.까지(이후 2021. 3. 25.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2019. 3. 27. D은행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소외 회사는 2020. 10. 21.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0. 10. 21.부터 2021. 10.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공하고 2020. 10. 23. D은행으로부터 1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3) 소외 회사를 운영한 B은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D은행에게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20. 12. 29.경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4. 15. D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중 347,810,455원(=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237,721,185원 +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10,089,2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는 2020. 12. 22.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326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0. 12. 22.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1, 2차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20. 12. 29.경 소외 회사가 D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1, 2차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등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단법인 E 수원시권선구지회의 부회장이었던 B으로부터 잠시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실제로 170,000,000원을 대여한 뒤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당시

위 지회 부회장으로서 일하다가 곧 회장에 출마하려는 B이 사업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행위도 사해행위가 되므로, 설령 피고가 실제로 B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곧바로 선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4. 10. 14. 사단법인 E 수원시권선구지회 부회장으로 위촉되었고, 2020. 12. 3. 위 지회의 회장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는 2019. 3. 4.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목 록

수원시 권선구 F 전 562㎡, 끝.

